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69
----------	-----

2023. 1. 19.(목)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나. 제출일자: 2023년 1월 4일

다. 회부일자: 2023년 1월 5일

라. 상정일자: 2023년 1월 16일

(제4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국장 홍만표)

가. 제안이유

○ 효율적인 교육정책 수행과 학교와 교육수요자 등에 대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청 및 직속기관의 기구를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본청 국 간 업무 조정

- 1) 법제 업무 등에 관한 사항: (현행)기획국 ⇒ (개정)행정국
(안 제5조의3제1항 및 제7조제1항)
- 2) 교육행정 전산화 및 교육정보화 계획수립 및 지원: (현행)교육국 ⇒ (개정)기획국
(안 제6조제1항 및 제5조의3제1항)
- 3) 방과후 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 (현행)교육국 ⇒ (개정)행정국
(안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 4) 장학금 및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현행)교육국 ⇒ (개정)행정국
(안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 5) 의회 및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현행)행정국 ⇒ (개정)기획국
(안 제7조제1항 및 제5조의3제1항)
- 6) 평생교육의 진흥, 평생교육시설의 설립·폐지 및 운영 지도 (현행)행정국 ⇒ (개정)교육국
(안 제7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 7) 성관련 교육 및 사안에 관한 사항: (현행)기획국 ⇒ (개정)교육국
(안 제5조의3제1항 및 제6조제1항)

○ 직속기관 분원 조정

- 1) (현행)충청북도교육도서관 미원교육도서관 ⇒ 기구수 감축(본원에서 운영)
- 2) (현행)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 중원교육도서관 ⇒ 기구수 감축(본원에서 운영)
(안 제14조제2항, 안 제35조제2항, 안 제36조제2항, 제37조의2, 별표1)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영균)

- 본 개정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의 효율적인 교육정책 수행과 학교 등 현장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3년 3월 1일자로 기구를 정비 하려는 것임
- 본청은 핵심 기능의 추진력 확보를 위해 대상 및 기능 중심의 재구조화를 목적으로 국 간 업무 조정을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법제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국에서 행정국으로, 교육행정 전산화 및 교육 정보화 계획수립 및 지원은 교육국에서 기획국으로, 방과후 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과 장학금 및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은 교육국에서 행정국으로, 의회 및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국에서 기획국으로, 평생교육의 진흥, 평생교육시설의 설립·폐지 및 운영 지도는 행정국에서 교육국으로, 성 관련 교육 및 사안에 관한 사항은 기획국에서 교육국으로 각각 업무를 조정함.
- 직속기관은 충청북도교육도서관 미원교육도서관,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 중원교육도서관을 각각 폐지하고 본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기구수를 감축하게 됨.
- 조직개편 추진 과정에서 본청의 분장사무 검토와 직속기관 분원 감축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업무를 확정하는 등 조직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협의를 거친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다고 판단됨.
-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기간 중 600여 건이 넘는 의견이 제출되었는데 의견 유형 등 의견 접수 현황과 접수된 의견의 반영·일부 반영·미반영 등을 포함한 의견 검토 결과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교육행정정보화 및 정보보호 총괄에 관한 사항

21. 의회 및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제7호 중 “생태환경”을 “환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제16호 및 제2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24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학교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25. 평생교육의 진흥

26. 평생교육시설의 설립·폐지 및 운영 지도

27. 성관련 교육 및 사안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제25호 및 제2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7호 중 “평생교육 시설 및 학원”을 “학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

30. 방과후 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

31. 장학금 및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제14조제1항 중 “수행하기”를 “수행하고, 평생교육에 기여하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육도서관의 일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단재로 2494-1에 둔다.

제35조제1항 중 “문화·예술·교육”을 “문화·예술·평생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35”를 “35,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창전길 219”로 한다.

제3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7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혁신과장, 미래인재과장, 재무과장”을 “유초등교육과장, 창의특수교육과장, 인성시민과장”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재무과장”을 “재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미래인재과장”을 “창의특수교육과장”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교육청 개척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시설과장”을 “시설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학교혁신과장, 재무과장”을 “유초등교육과장, 재정복지과장”으로 한다.

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시설과장”을 “교육시설과장”으로 한다.

⑥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미래인재과장”을 “창의특수교육과장”으로 한다.

⑦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재무과장”을 “계약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⑧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유아특수복지과장”을 “교육복지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⑨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학교체육 업무담당 과장과 학교혁신과장”을 “학교체육 업무담당 부서의 장과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⑩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학교혁신과장, 예산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⑪ 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소관 업무담당 과장”을 “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⑫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체육건강안전과장”을 “인성시민과장”으로 한다.

⑬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교육국장, 행정국장, 기획국장”을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

⑭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교육국장, 행정국장, 기획국장”을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

⑮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교육국장, 행정국장, 기획국장”을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

[별표 1]

직속기관 분원(관)의 명칭과 위치

직속기관	분원(관) 명칭	위치	관련조문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	환경교육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80번길 17	제10조의2 관련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북부분원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침단산업로 670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대소새마을길 10	제13조의2 관련
충청북도교육도서관	진천문화관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사송3길 17	제16조의2 관련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제천분원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북로 141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학현소야로 393	제22조의2 관련
	옥천분원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용방1길 79-14	
충청북도국제교육원	충주분원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대로 50	제25조의2 관련
	북부분원	충청북도 제천시 죽하로 13	
	남부분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 75	
	중부분원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인석로 381	
충청북도해양교육원	제주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지9길 29	제46조의5 관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의3(기획국) ① 기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8. (생 략)</p> <p>9. <u>법제 업무 등에 관한 사항</u></p> <p>10. ~ 19.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5조의3(기획국) ----- -----.</p> <p>1. ~ 8.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10. ~ 19. (현행과 같음)</p> <p><u>20. 교육행정정보화 및 정보보호 총괄에 관한 사항</u></p> <p><u>21. 의회 및 지방교육행정협의 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u></p>
<p>제6조(교육국) ① 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6. (생 략)</p> <p>7. 과학, 수학, 정보, <u>생태환경</u> 및 산업교육에 관한 사항</p> <p>8. <u>교육행정 전산화 및 교육정보화 계획수립 및 지원</u></p> <p>9. ~ 13. 삭 제</p> <p>14. · 15. (생 략)</p> <p>16. <u>방과후 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u></p> <p>17. 삭 제</p> <p>18. ~ 21. (생 략)</p> <p>22. <u>장학금 및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u></p>	<p>제6조(교육국) ①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 <u>환경</u> ----- -----</p> <p><u><삭 제></u></p> <p>14. · 15.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18. ~ 21.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23.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7조(행정국) ①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삭제

4. ~ 21. (생략)

22. ~ 24. 삭제

25. 의회 및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6. 평생교육의 진흥

27.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의 설립·폐지 및 운영 지도

28.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14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도서관법」 제27조에 따라 정

23. (현행과 같음)

24. 학교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25. 평생교육의 진흥

26. 평생교육시설의 설립·폐지 및 운영 지도

27. 성관련 교육 및 사안에 관한 사항

제7조(행정국) ① -----
-----.

4. ~ 21.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27. 학원-----

28. (현행과 같음)

29.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

30. 방과후 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

31. 장학금 및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제14조(설치) ① -----

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교육도서관(이하 “교육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교육도서관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렬로 19에 둔다.
<단서 신설>

제35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도서관법」 제27조에 따라 정보·문화 교육센터로의 기능 수행 및 청소년의 교양증진, 소질 계발, 정서순화 등 문화·예술·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이하 “중원교육문화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중원교육문화원은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대로 50에 둔다. 다만, 중원교육문화원의 일부는 충청북도 충주시 국원대로 35에 둔다.

제36조(원장) ① (생략)

②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분관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

수행하고, 평생교육에 기여하기

② . 다만, 교육도서관의 일부는 충청북도 충주시 상당구 미원면 단재로 2494-1에 둔다.

제35조(설치) ① 문화·예술·평생교육

② 35,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창전길 219

제36조(원장) ① (현행과 같음)

<삭제>

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7조의2(분원) 중원교육문화원
에 두는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직속기관 분원(관)의 명칭과 위치

직속기관	분원(관) 명칭	위치	관련조문
총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	환경교육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80번길 17	제10조의2 관련
충청북도단체교육연수원	북부분원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첨단산업로 670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대소새마을길 10	제13조의2 관련
충청북도교육도서관	미원교육도서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단재로 2494-1	제16조의2 관련
	진천문화관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사송3길 17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제천분원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북로 141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학현소야로 333	제22조의2 관련
	옥천분원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용방1길 79-14	
충청북도국제교육원	충주분원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대로 50	제25조의2 관련
	북부분원	충청북도 제천시 죽하로 13	
	남부분원	충청북도 옥천군 옥전읍 삼양로 75	
	중부분원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536-43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	중원교육도서관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창전길 219	제37조의2 관련
충청북도해양교육원	제주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곽자9길 29	제46조의5 관련

<삭 제>

[별표 1]

직속기관 분원(관)의 명칭과 위치

직속기관	분원(관) 명칭	위치	관련조문
총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	환경교육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80번길 17	제10조의2 관련
충청북도단체교육연수원	북부분원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첨단산업로 670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대소새마을길 10	제13조의2 관련
충청북도교육도서관	진천문화관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사송3길 17	제16조의2 관련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제천분원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북로 141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학현소야로 333	제22조의2 관련
	옥천분원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용방1길 79-14	
충청북도국제교육원	충주분원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대로 50	제25조의2 관련
	북부분원	충청북도 제천시 죽하로 13	
	남부분원	충청북도 옥천군 옥전읍 삼양로 75	
	중부분원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인석로 381	
충청북도해양교육원	제주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곽자9길 29	제46조의5 관련

관 계 법 령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4.7.] [대통령령 제30601호, 2020.4.7. 일부개정]

제6조(기구 설치의 일반요건) 제6조(기구 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3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② 실(室)은 업무의 성질상 국 또는 과로서는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③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④ 과(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과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본청의 경우에는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정원을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만 설치한다. <신설 2017. 5. 8., 2018. 2. 27.>

1. 국의 소관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그 소관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⑤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과 과·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교육감의 지휘·감독하에 둔다. 다만, 교육감을 직접 보좌하는 공보(公報)기능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과·담당관 등의 설치) 본청에 두는 과·담당관의 설치와 사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시·도 교육청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1.>

②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 또는 조례의 위임에 따른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6. 1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23.3.1.자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비용 반영

2. 비용 발생 요인

- 행정장비 구입비, 사무실 이전 재배치에 따른 이전비, 리모델링비, 기관 내외부 현판 비용 등

3. 관련조문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교육지원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사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의3(기획국) ① 기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교육국) ① 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행정국) ①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비용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사업명	금액(천원)	비고
조직개편관련 물품구입 (OA시스템,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등)	103,750	
사무실 재배치 비용 (이사비, 리모델링비, 통신선, 전기공사 등)	100,000	
일반 소모성 물품 구입비 (현판, 표찰, 안내도 등)	100,000	
합 계	303,750	

다. 재원조달방안: 자체수입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2023년 1회 사업으로 연도별 발생 비용 없음

6. 작성자 : 행정국 행정과장 황경식